

조선시대 비자(婢子)의 경제활동

A Study on the Labor Experience of Female Slaves in the Yi Dynasty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조교수 김성희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 Sung-Hee Kim

〈목 차〉

- | | |
|-------------------|---------------|
| I. 서 론 | V. 노동의 대가와 보수 |
| II.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 VI. 비자의 가정생활 |
| III. 비자의 인구와 노동연령 | VII. 결 론 |
| IV. 비자의 노동 | 참고문헌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social labor experience of women especially female slaves and to review the family problems of them in the Yi Dynasty. For the purpose, this study made use of literature review.

It was founded that female slaves in the Yi Dynasty had participated in social labor between the ages 10 and 60 though they were forced to work against their will. The slaves whether they belonged to government or landowners were entrusted with hard work or were bound to pay cotton fabrics. So they contributed to maintain national economy and to accumulate private wealth but they sometimes suffered their family to be dissolved by the demand of owners.

I. 서 론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의 참여는 산업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특징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정과 생산의 장소가 분리되는 산업사회에서 남성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시작되어 취업기회가 확대되면서 전문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은 산업사회 이전 사회의 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여성의 열등성을 강조한다. 성평등 사회에서 남성과 더불어 여성이 부양자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정립함에 있어 이러한 정체감은 여성에게 극복해야 할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의 역사가 짧다는 인식은 여성이 주로 가사노동을 담당하였던 산업사회의 일

부 증거로 부터 나온 상당히 왜곡된 견해이다. 여성 이 사회적이고 공적인 노동에 종사한 것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도 많은 여성이 산업사회의 노동자와 유사하게 사회적 영역에 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생산물을 供與(공여)하고 생존을 보장받았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의 비자(婢子)들은 관(官)과 왕실 또는 주가(主家)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산물을 납부하면서 일상을 영위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을 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를 담당함으로써 오늘날의 취업여성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 및 개별가계 운영에 기여하였다.

인구학적으로 볼 때 노비는 조선초기에는 전 인구의 1/3 이상 1/2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녀가 동일 비중이라고 가정할 때 비자는 전 인구의 15%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사회적으로 비중이 큰 노동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비자들은 소유주에 따라 왕실 또는 관이 소유하였는가 개인이 소유하였는가에 의해 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로 나뉘었다. 공노비의 경우는 국가기관에 입역(立役)하여 하인으로서 공장인(工匠人)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납공(納貢)의 의무를 지고 면포를 제작하여 국정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과 물품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사노비의 경우는 주가(主家)의 하인으로서 밥짓기, 바느질, 청소, 육아 등의 가사노동을 수행하였고 농업노동과 상업노동에도 종사하여 주가의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가족을 위한 사적(私的)인 성격의 노동이 아닌 공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의 경제활동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비자의 노동은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되어 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비자의 노동이 신분적 강제에 의해 출생에 따라 이루어져 삶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고, 주가에 소유된 채 수행되어 사적 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노비는 대부분 노동자로서보다

사회구조를 구성하는 신분계층, 억압받는 계층으로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노비의 노동은 일반적으로 노동력수탈, 생산물수탈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고, 여성인 비자의 노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여성의 역사연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궁녀(宮女)와 의녀(醫女)가 다루어 지기는 하지만 연구의 초점은 경제활동보다는 특수한 여성으로서 그들의 신분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특히 비자의 노동이 역사연구에서 누락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이들의 노동을 일종의 경제활동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노동의 근원을 밝혀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산업화와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니며 여성의 일이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줌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 기여의 역사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리라고 본다.

그리고 부양자로서의 역할이 현대여성에게 새로운 역할로 편입되어가는 이때 과거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밝혀줌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유용한 근거를 제공하리라고 본다.

II.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조선시대의 여성은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적(私的)인 성격의 가사노동 뿐 아니라 공물납부나 조세의 납부, 시장교환을 위한 물품생산활동과 같은 공적인 성격의 노동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선시대 여성의 경제적 활동 중 주로 가내(家內)에서 수행하였던 노동에 관해서는 이미 연구한 바 있으므로(김성희, 1992)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적인 장소가 아닌, 공적(公的)인 장소에서 행해지던 노비의 사회적 노동에 초점을 두어 조선시대 여성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자료는 각종 문헌자료 특히, 오희문(1539-1613)의 쇄미록¹⁾과 같은 개인문집과 2차 자료로서 노비

1) 쇄미록은 1591년 임진왜란부터 9년에 걸쳐 쓰여진 일기로 노비를 다룬 일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및 가족에 관한 연구 등을 이용하고자 한다. 연구과정에는 사례의 일반화 문제, 남성과 선비 중심의 기록에서 천민이면서 여성이었던 비자의 기록을 추출해내는 문제, 일터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은데서 오는 사적인 가사노동과 공적인 가내노동을 구별해내는 문제 등 명백히 밝혀내기 어려운 난제들이 부수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의 역사성을 밝혀내는 시도로서의 의의가 선행하므로 이런 문제점들은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연구 제한점으로 남겨둔다.

III. 비자의 인구와 노동연령

1. 비자의 인구

조선시대에 노비는 소유주가 왕실 또는 국가기관인가 개인인가에 따라 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로 구분되었다. 공노비는 소속이 궐내에 속하는가 중앙의 각사(各司)에 속하는가 또는 지방의 관아, 역, 향교, 병영 등의 외방(外方) 각사에 속하는가에 따라 내노비(內奴婢)와 사노비(寺奴婢), 관노비(官奴婢)로 불리었다.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입역(立役)을 하는가 생산물을 납부하는가에 따라 선상(選上)노비와 납공(納貢)노비로 불리었다. 선상노비는 관아 등에서 하인(下人)으로서의 일을 하거나 공장인(工匠人)으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 노동력을 강제 징발당하였다. 이들은 입역을 하지 않을 때는 독자적인 생활기반과 본업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가족과 주된 본업인 농업에 종사하였다. 납공노비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입역하는 대신 1년에 2필 정도의 면포를 제작하여 이를 소속된 곳에 납부하였다.

사노비는 주가(主家)와의 주거형태에 따라 술거(率居)노비와 외거(外居)노비로 구분되었다. 술거노비는 주가(主家)에 종속되어 주가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면서 잡일과 농사일을 돌본 반면, 외거노비는 소유주인 주가의 외부에 독립된 살림을 구성하여 거주하면서 1년에 면포 2필의 납공(納貢)을 하거나 일정기간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여성 노비인 비(婢)는 남성 노(奴)와 마찬가지로 공노비로서 또는 사노비로서 여러 기관 또는 개인에 소유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호적 조사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1630년 경상도 산음 장적(帳籍)을 보면(최재석, 1983:383) 천민 여성가구주의 신분계급으로 장내래관비(將內來官婢), 봉상사비(奉常寺婢), 교비(校婢), 사비(私婢), 사비(寺婢)가 기록되어 있다.

1690년 대구호적에서는(최재석, 1983:456) 여성이 가구주로 보이는 천민가구의 직역으로 부비(府婢), 영비(營婢), 사비(私婢), 관비(官婢), 영기(營妓), 부기(府妓), 관기(官妓), 무녀(巫女)가 올라 있다.

1756년 전라도 곡성현 도상면 동변리 서변리 호적의 경우에는(최재석, 1983:430) 여성가구주로 사비(私婢)가 3가구, 관비(官婢)가 28가구 기록되어 있다. 비자들은 사노비로서 공노비로서 사가와 다양한 기관에 소속되어 남성 노(奴)와 더불어 사회와 개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원을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주로 출생에 의한 신분 세습으로 확대재생산되었다. 조선 전기(前期)에 노비 소생(所生)은 원칙적으로 모(母)의 신분을 따르게 되어 있었지만, 15세기에는 부(父)의 신분을 따라 양처(良妻)의 소생까지도 노비가 되는 종모종부법(從母從父法)이 확립되어 노비인구를 증가시켰다.

노비인구는 조선 초기에는 전인구의 1/3 이상 또는 거의 1/2을 점유하였다고 추정되고(지승종, 1995), 조선 중기에도 전인구의 30-50%를 차지하였다고 추정된다(김용만, 1997). 남성 노(奴)와 여성 비(婢)가 동일 비율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성 비자는 전 인구의 15-25%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노비(公奴婢) 중 비자(婢子)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국대전(經國大典) '내사노비감공급대사목(內寺奴婢減貢給代事目)'에서 찾아볼 수 있다(전형택, 1989:111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내노비(內奴婢) 5,574명 중 비(婢)는 2,298명으로 41.2%를 차지하고 있었고, 사노비(寺奴婢) 30,617명 중에는 비가 19,838명으로 64.8%를 차지하고 있었다. 노비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적지 않았으며 중앙 각사(各司)의 경우는 여성의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사노비(私奴婢)로서 솔거노비 중 비자가 차지하였던 비중은 1807년 경상도 월성군 양좌동 흐적(최재석, 1983:406-416)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양반 가구가 보유한 남자 노(奴)는 총 68명인데 반해 여자 비(婢)는 273명이나 되었다. 비가 노보다 4배나 많았던 것으로 보아 사노비 중 여성의 비중은 남성보다 커다고 볼 수 있다.

노비인구는 조선후기에는 양역(良役)을 담당할 인구의 증가를 위해 노(奴)와 양처(良妻)의 소생은 모(母)의 신분을 따르도록 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비는 대가를 치르고 천민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조선후기 노비의 감소는 부안김씨지평공파가문(扶安金氏持平公派家門)의 호구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 후반에서부터 18세기 전반 까지 15명 있던 솔거노비가, 18세기 후반에는 10명 내외, 19세기 들어와서는 5명 미만으로 감소하였다(전형태, 1989: 57에서 재인용). 김종직 가문에서도 1801년 7명 있던 솔거노비와 15명 있던 외거노비가 1849년에는 각각 1명, 6명으로 감소하였다(김용만, 1996:337에서 재인용).

조선 후기에 전반적으로 노비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노비의 신분세습이 종모종부법(從母從父法)에서 노양처²⁾소생종모종량법(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으로 변화함에 따라 오히려 여성 비의 수는 남성 노보다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2. 노동연령

경국대전(윤국일, 1990)에 “15살 이하나 60살 이상의 사람은 신공(身貢)과 신역(身役)을 면제한다”는 규정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공노비의 경제활동 연령은 16세에서 59세까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녀(醫女)의 경우와 궁녀의 경우는 좀더 일찍 10세 무렵부터 활동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세종실록 5년 12월 신해일에 “지방의 여자 의원은… 고을의 관청 여자종 가운데서 15살 이하 10살 이상의 똑똑한 소녀로서 2명씩 뽑을 것입니다.”라는 기록이 있어 의녀는 10세 이상이 경제활동 연령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궁녀(宮女)의 경우는 효종 4년 9월 병진일에 “양가(良家)의 딸을 뽑아 들여 궁녀로 삼게 하니… 10세 이상인 자들이 다투어 시집가서 피하였다. 국법으로는 궁인을 으례 각사(各司)의 종에서 뽑는데… 양민을 침범하니… 개탄하였다” 한 기록에서 10세 이상이 궁녀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노비(私奴婢)로서 비자의 연령은 다음 〈표 1〉의 1672년~1825년 사이 부안 김씨지평공파가문의 호구자료(전형태, 1989: 58에서 재인용)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노비의 경우는 10대 미만에서 60대 이후까지 거의 전 연령에 걸쳐 노동을 하였다.

주가(主家)에서 비자가 거의 종신토록 노동하였다는 사실은 쇄미록에도 찾아 볼 수 있다. 갑오년 12월 15일에 늙은 계집종 열금이 죽자 “젊었을 때 잡혀와서… 나이 70이 지나도록… 길쌈을 잘하고 집

〈표 1〉 사노비 비자의 연령

10세 미만	11~15세	16~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61세 이상
1명 (0.4%)	18명 (7.5%)	43명 (18%)	45명 (19%)	47명 (20%)	32명 (14%)	23명 (10%)	10명 (4%)	2명 (0.8%)	1명 (0.4%)

2) 17세기의 신분간 결혼형태는 경상도 산음장적에 따르면(최재석, 1983) 부부가 모두 천민인 부부는 50쌍, 남편이 천민이고 처가 상민인 부부 22쌍, 남편이 상민이고 부인이 천민인 경우 22쌍, 부인이 양반이고 남편이 천민인 경우 0쌍으로, 노와 양처가 혼인하는 경우는 전체의 5%를 차지하였다.

안일에 부지런하니… 이는 죽히 취할 바이다”라고 하였다.

IV. 비자의 노동

1. 공노비(公奴婢)로서 비자의 노동

공노비로서 비자(婢子)는 궐내와 중앙 각사(各司), 지방의 관아(官衙), 역(驛), 향교(鄉校) 등의 관청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역(身役)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포(綿布)를 제작하여 납부하였다.

궐내의 궁녀는 시대에 따라 양인(良人)이 뽑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각 관청의 비자가 선입(選入)되었다. 주로 비자로 구성되었던 궁녀는 성종조에는 대왕대비전에 시녀 10명, 무수리 6명, 바기 4명, 수모 3명, 방자 5명, 여령 1명, 왕대비전에 시녀 9명, 무수리 5, 바기 3명, 수모 2명, 방자 7명, 여령 1명, 그리고 임금에게 시녀 20명, 무수리 10명, 바기 6명, 방자 12명, 여령 1명, 총 105명의 궁녀가 있었다(성종실록, 원년 2월 읊묘일).

궁녀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고종 때는 대전에 100명, 대비전에 100명, 중궁전 100명, 세자궁 60명, 세자빈궁 40명, 세손궁 50명, 세손빈궁 30명으로 총 480명이 있었다(고종실록 고종 31년 7월조). 조선시대에 적계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500여명의 여성의 궐내에서 시중과 관련된 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궐내에서 비자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하인의 일 즉 차비(差備)로는 경국대전에 따르면(윤국일, 1990) 상배색(床排色: 음식상 맡은 차비), 자색(炙色: 고기굽는 차비), 반공(飯工: 밥짓는 차비), 포공(泡工: 두부 만드는 차비), 주색(酒色: 술 맡은 차비), 다색(茶色: 차 맡은 차비), 병공(餅工: 떡 만드는 차비), 등촉색(燈燭色: 등불 맡은 차비), 수공(水工: 물 길는 차비) 등이 있었다.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비자는 장공인(匠工人)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경국대전에 올라있는 능장(綾羅匠: 비단짜는 장공인), 도다익장(都多益匠: 도투락댕기 만드는 장공인), 침선장(針線匠: 바느질하

는 장공인), 합사장(合絲匠: 여러가지 실을 섞어 천을 짜는 장공인), 세답장(洗踏匠: 빨래하는 장공인)은 비자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관비 중에는 의녀(醫女)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조 때의 속대전에 의하면 의녀는 내국 여의, 혜민서 여의로 양분하여 내국 의녀는 12명, 혜민국 의녀는 70명이 있었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539에서 재인용). 내국 의녀는 궁중에 출입하여 왕실 여성의 질병 치료에 종사하였고 혜민서 의녀는 일반 부녀의 질병치료에 종사하였다.

의녀로서 지방 부녀에 대한 의료활동 상황은 쇄미록 병신년 5월 28일에 “부증이 아직 차도가 없어 아침에 태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의원을 불러 보였더니… 침으로 파종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 관청에 소속된 노비 중에는 기녀(妓女)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의약(醫藥), 침선(針線), 가무(歌舞)의 특별한 기술을 배워 의했다. 기녀제도는 태종 이후부터 계속 그 폐지가 논의되었지만 실현되는 못하였고 오히려 경국대전에 3년마다 여기(女妓) 150명을 뽑아올린다고 한 것을 보면(이화여자대학교, 1984: 518에서 재인용) 그 수는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공인, 의녀, 기녀와 같이 특별한 기술을 가진 여성을 제외하고는 공노비로서 비자는 대체로 식(食) 생활과 관련된 일이나 하인 일을 하였던 것 같다.

경국대전(윤국일, 1990)에 “부(付)의 지방관리에게 남종 3명 여종 5명, 엄지말과 새끼말 각각 2필, 대도 호부 이하 고을은 남종 2명 여종 4명, 엄지말과 새끼말 각각 2필이, 군(郡)이하의 고을에서는 남종 2명 여종 3명, 엄지말과 새끼말을 각각 1필 지급한다”고 한 것을 보면 관원에게 하인으로서 노비가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쇄미록 갑오년 6월 6일에 “아중(衙中)에서 점심밥을 지어 대접하고… 조금 있자니 관(官)에서도 밥을 지어 왔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관내에서 비자는 식사준비와 같은 시중드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공노비는 신역(身役)의 의무 외에 임역

(立役)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남공(納貢)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남공노비의 부담에 대해 경국대전에서는 남종은 무명 1필과 종이돈 20장, 여종은 무명 1필과 종이돈 10장으로 규정하였다(윤국일, 1990). 순조 때 편찬된 만기요람에서는 1년에 노(奴)는 면포 2필, 비(婢)는 1필 반을 남공하도록 하였다.

비(婢)의 남공부담은 공노비의 경우 노(奴)보다는 가벼웠지만, 노와 혼인을 한 경우 남공을 위한 포의 제작은 노(奴)가 아닌 비자(婢子)의 일이었을 것이므로 비자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기간 남공을 위해 직조를 하는 노역은 매우 커울 것으로 볼 수 있다.

남공된 포와 종이돈은 국가의 화폐로서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화폐로는 포화(布貨)와 종이돈인 저화(楮貨)가 통용되었다(윤국일, 1990). 남공노비는 중보문현비고에 따르면 성종 때에는 35만명, 효종 때에는 19만여명이 있었다(전형택, 1989; 110에서 재인용). 이 중 남공비자가 절반에 해당하는 10만명이 있었다고 추산하더라도 남공 면포는 20만필에 이르렀을 것이므로 국가재정에 여성의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커다고 볼 수 있다.

선상(選上) · 입역(立役)을 기초로 하는 노비의 노동력 동원체제는 17세기 이후 점차 임노동자(賃勞動子)를 고용하는 고립제(雇立制)로 바뀌어 갔다(전형택, 1989). 선상(選上) 기간동안 고된 노역에 종사하면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데다 6개월간 가족을 떠나 선상 · 입역하게 되면 농업에 종사할 수 없어 노비가족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였기 때문에 기피가 늘어난 것이 그 이유였다.

공노비를 대신하여 경인(京人)이 대가를 받고 고용되고, 공노비는 국가에 대하여 노동력 제공의 의무에서 벗어나 신공납부의 의무만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경인(京人)도 결국은 대부분 노비였던 것으로 추정되므로(전형택, 1989) 거의 모든 비자들은 면포 제작에 힘쓰면서 한편 고용노동에도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조 36년에는 청의 사신을 영접할 때 영접도감에서 사역노(使役奴) 5명과 비(婢) 3명을 “호조(戶曹)에서 급가(給價) 고립(雇立)하라”(추관지 제 5편 장예부; 전형택, 1989:92에서 재인용)고 한 것을 보면,

조선후기에 여성들은 관가에 고용되어 노임(勞賃)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사노비(私奴婢)로서 비자의 노동

사노비로서 비자가 주가(主家)에서 하던 일은 밥짓기, 물긷기, 곡식찧기, 바느질, 직조, 청소, 육아 등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이었다. 조선시대 부녀 특히 사족(士族)의 부녀는 노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몸소 부엌일을 하지 않았다(김성희, 2000). 사가(士家)에서 노비는 특히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의 실제적인 수행자였다.

발일에도 비자가 동원되었는데 쇄미록 병신년 5월 1일에 “두 계집종을 시켜서 풀을 매개 했다”든가 병신년 5월 5일에 “두 계집종을 오늘부터 동네 두레 풀매기애 내보냈다.”는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조선시대에 사노비는 주가(主家)의 일상의 가사노동 수행에 그 노동력이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부(富)를 축적하는데 그 노동력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선비는 상행위(商行爲)를 천시하고 도외시하였지만 생계유지 또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실제로는 술거노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기도 하였다(김용만, 1997).

쇄미록에 “어제 향춘이 시장에 가서 술을 팔아 쌀을 사려고 돈을 주머니에 가득히 넣었다가 잊어 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으니…탄식스럽다(쇄미록, 계사년 11월 22일)”고 한 것에서 오희문도 비에게 술장사를 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사노비가 외거(外居)노비로서 남공을 할 경우 남공수준은 공노비와 유사하였다. 이의 근거는 성종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종 24년 5월 무자조에 “대체로 공천이나 개인의 노비들이 한 해에 무는 몸값이 배 2필에 지나지 않는다”하였다.

사노비로서 남공노비인 비자의 비중은 해남윤씨 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21년 기록에 따르면 노(奴) 142명 중 84명, 비(婢) 119명 중 78명이 신공대상자였다(안승준, 1992에서 재인용). 전체 노비 중 신공을 바치는 노가 32%, 비가 30%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아 주가(主家)의 경제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비자는 노(奴)에 못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공은 면포 뿐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이에 상응하는 경우 납부되었다. 쇄미록 병신년 8월 24일에 “어제 강건너 종 광진, 계집종 근개 등이 양식할 쌀 1두(斗)를 가지고 왔다. 우리집 밭과 논을 해 먹는 사용료로 준비해서 가지고 온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쇄미록 병신년 12월 27일조에 업성개에게서 신공으로 미(米) 6두, 마태 5두에 세찬(歲饌) 약간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정유년 정월 17일에는 비(婢) 광덕의 뜻으로 받아온 신공은 백미 7두, 적두 3두, 마태 5두, 마초 30여 속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공납부를 위해 비자는 면포 제작 뿐 아니라 쌀, 콩, 말먹이 풀 등 다양한 농산물의 생산에도 힘썼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노동의 대가와 보수

1. 공노비(公奴婢)의 노동 대가와 보수

공노비로서 국가기관에 예속되어 선상(選上) · 입역(立役)하는 노비에게는 입역하는 기간동안에는 신공이 면제되었고 2명의 봉족(奉足)이 생계보조를 목적으로 지급되었다. 경국대전(윤국일, 1990)에 “중앙과 지방에서 신역(身役)을 지고 있는 노비는 신공을 면제해 주는 동시에 봉족을 2명씩 준다. 호수(戶首: 선상의 역을 지는 노비)는 봉족에게서 해마다 무명과 구격배를 각각 1필씩 징수한다” 했다. 국가에 의무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는 봉족 2명에게서 1년에 면포(綿布) 2필과 정포(正布) 2필을 거둘 수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역(京役)노비에게는 외방(外方)에 거주하는 외거(外居)노비로써 봉족을 지급하였는데 외거노비 중 노자보다 비자가 수적으로 우세하게 되자 성종 3년에는 경역노비의 봉족은 외거비자(外居婢子)로써 정급(定給)하였다(지승종, 1997). 비자가 봉족으로서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여성의 노동이 국가의 중요한 재정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상 · 입역노비에게는 2명의 봉족을 지급하는 것외에는 따로 정기적인 급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의복과 식사와 식량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성종실록 원년 2월 읊묘일에 “시녀들에게 의복과 식사와 매달료식을 주라”는 지시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17세기 이후 노비의 동원체제가 선상 · 입역제에서 고립제(雇立制)로 바뀜에 따라 노비는 보수를 받고 고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받았던 1삭(朔) 급료는 도지지(度支志:전형택, 1989:98-99 재인용)에 따르면 노비총이 담당했던 직역의 경우 대체로 미(米) 6-7두였다.

내의원 소속의 의녀 19명은 고용료로 미(米)를 8-11두(斗), 혜민원 소속의 의녀 3명은 미 8두, 내주방(內酒房) 소속의 여수공(女水工) 1명은 12두의 비교적 많은 급료를 지급받았다. 이를 제외하고 궐내의 다색(茶色) 12명이 6두, 등촉색(燈燭色) 12명이 5두, 상의원(尚衣院)의 침선비(針線婢) 2명이 6두 등 대체로 6두 정도를 받았다. 공노비로서 조선시대 여성은 명백히 임금을 받는 경제활동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사노비(私奴婢)의 노동 대가와 보수

사노비 중 술거노비는 의무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주가(主家)로부터 최저의 의 · 식생활을 보장받았고 행랑채에 거주하면서 주생활을 보장받았다.

쇄미록 갑오년 2월 18일에 “식사 후에 종을 시켜 송피(松皮)를 베껴다가 종들의 먹는 것에 보충시키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임란(壬亂)으로 먹을 것이 없던 시기여서 송피를 구하게 하기도 하였겠지만 최소한의 먹을 거리를 주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노비의 의생활에 대한 주가의 관심은 쇄미록 병신년 6월 4일에 “오늘 장에 덕노로 하여금 미역을 가지고 나가서 보리와 바꾸게 했다. 보리 10두를 바꾸어 그 중에서 2두로 말더듬이 계집종의 도룡이를

샀다”는 기록과 병신년 4월 28일에 “거치른 포목 2필로 여름옷을 만들게 해서 계집종에게 졸 작정이다”라고 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의 공노비의 고립(雇立)이 증가하면서 사노비도 점차 노임을 받고 품을 파는 것을 볼 수 있다. 쇄미록 병신년 5월 8일에는 “말더듬이 계집종이 품을 매다 말고 머리가 아프다고 늦은 아침에 되돌아왔으니 후일 물건으로 품삯을 주고 한 사람 뜻은 꼭 감해야겠다 유감이다.”는 기록이 있다. 사노비로서 비자들은 노동력을 주가에 제공하고 최저생활을 보장받기도 하였지만 노임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생활을 보장받거나 노임을 받고 일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노비로서 조선시대 여성은 명백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VI. 비자의 가정생활

1630년 경상도 산음장적에 따르면 대부분 노비로 구성된 천민(賤民)가구의 남자호주 중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는 33.6%에 이르고 있고 가구주의 연령도 60대와 70대에 집중되어 있다(최재석, 1983).

노비가 일정기간 소유주에 예속되어 있다가 늦게 가족을 형성하여 호주의 연령이 상승되었다고 본다면, 노비는 가족을 형성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사노비 중 특히 솔거노비는 혼인율이 20.8%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혼인 자체가 배우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노비 주인의 재산증식에 많은 영향을 미쳐 통제를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김용만, 1997: 175). 즉 노가 타인 소유의 비와 혼인하여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는 비를 소유한 주인의 것이 되므로 주가의 노비혼인에 대한 간여는 컷다고 볼 수 있다.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했다하더라도 천민의 가족유형은 1세대 가족이 가장 많아 79%를 차지하였고 2세대 가족은 20.2%, 3세대 가족은 0.8%에 지나지 않았다. 가족원 수는 1인이 32.8%, 2인이 49.6%, 3인 11.8%, 4인 5.0%, 5인 0.8%로 소인수 가족을 형성하

였다(최재석, 1983). 조선시대의 실제적인 경제활동 인구였던 천민계층의 가족은 핵가족이면서 소인수 가족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1세대 가족과 소인수 가족이 많았던 것은 노비는 한 가족으로 살더라도 배우자에 따라 그 소생(所生)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었고, 노비를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 노비가족을 1~2명씩 분할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서 가족과 유리되어 선상(選上)되거나 착치(捉致)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노비는 다세대 가족이나 다인수 가족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노비 가족의 이산(離散) 현상은 쇄미록 을미년 12월 18일에 “막정(奴)은 본래 평양에 살았는데 나이 14세에 잡아다가 심부름을 시켜 이제 37년이 되었다”는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0세 무렵의 어린 나이부터 본주(本主)의 의사에 따라 가족과 유리되어 입역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면 노비들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2세대 가족을 형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자녀 뿐 아니라 남편이 있는 비자도 주가에 착치(捉致)되어 오기도 하였다. 쇄미록 정유년 3월 16일에 가족의 병세가 심하자 환자 옆에서 시중 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금천에 가서 계집 종 은개를 데리고 오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10월 8일자에 보면 은개의 남편 수이가 봉산에서 왔는데 상전의 편지를 갖고 있지 않으니 필시 도망온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노비를 필요에 따라 데려왔음을 알 수 있다. 본주(本主)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노비의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 노비의 가족은 이산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해체적 현상은 공노비도 비슷하게 경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궁녀의 경우 10대에 선상(選上)되었고 의녀도 10대부터 선상되었다는 것에서 부모자녀간의 관계 유지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다음의 태종실록(14년 5월 신묘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명나라 사람들이 … 여종을 아내로 삼았으니 아

내를 데리고 지방에 가서 살라고 할 것이라고” 예조에서 제의하자, 여종은 신역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태종실록 14년 6월 기유일에는 가뭄이 계속되자 대궐안에 있는 어린 여자들이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무수리들 중에서 남편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고 10일씩 엊바꾸어 번(番)을 들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수도의 노비는 2개의 번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해 가면서 신역을 지게 하고 지방이면 7개의 번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해가면서 중앙으로 올려 선상시켰다(윤국일, 1990). 6개월씩 교대로 입역(立役)하였으므로 비자들은 가족이 있다하더라도 특히 지방거주자는 3년에 6개월은 가족과 떨어져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노비도 사노비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VII. 결 론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은 일터와 생활의 장소가 분리되는 산업화 이후에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산업화 이전의 조선시대의 여성은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와 단절된 채 가사에 전념해온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연구주제가 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사회적 활동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였다. 특히 경제활동을 사회적으로 경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운영이나 개인의 가계운영에 필요하였던 의류제작, 식품제조 등의 노동이 비자(婢子)에 의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연구된 경우는 없었다.

조선시대의 비자는 관(官)과 주가(主家)라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이의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노동산출물은 국폐로써, 국가의 재정원으로서 또는 개별가계의 소득원으로서 국가경제 유지와 소유자의

부(富) 형성에 기여하였다. 오늘날의 취업여성이 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상품제조에 종사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거나 자본가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비자들도 사회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자(婢子)의 인구는 노비의 인구가 전 인구의 30~50%를 차지하였던 조선중기를 기준으로 할 때 적어도 전 인구의 15%에서 25%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95년 현재 총인구 중 여성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8.5%³⁾인 것과 비교하면 조선시대에도 거의 유사한 비율로 여성이 사회적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자들의 경제활동 연령은 사노비의 경우는 10대 이하 60세 이상도 있었지만 공노비의 경우는 16세에서 59세까지가 법정근로연령이었다.

비자들이 수행한 노동은 공노비의 경우, 선상(選上)·입역(立役)되었을 경우에는 하인으로서 또는 공장인(工匠人)으로서 의류 및 식품제조와 관련된 일을 하였고 입역을 하지 않았을 때는 면포를 납부하기 위해 직조에 종사하였다.

사노비들은 술거노비의 경우 주가(主家)의 식생활 및 의생활, 육아와 관련된 노동 외에 농업노동, 상업활동에도 종사하였다. 외거노비의 경우는 공물납부를 위해 직조나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였다. 조선시대 비자는 주로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물품제조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의 대가로 선상·입역하는 공노비들은 국가로부터 봉족(奉足)을 지급받았고, 의복과 식사, 식량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 노비동원체제가 고립제(雇立制)로 전환되면서부터는 비자들은 노임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 되었다.

사노비들은 노동의 대가로 주가로부터 최저의 의·식·주생활을 보장받거나 품삯을 받았고, 주가의 토지자본을 사용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현대 산업사회의 가정고용인이나 취업여성이 생활을 보장받고 임금을 받은 것처럼 노동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3) 1995년의 센서스 인구는 44,554천명, 여성 취업자 인구는 8,224천명(한국여성개발원, 1999에서 재인용)

한편 비자들은 현대 맞벌이 가족의 여성이 결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것처럼 가정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들은 가족을 형성하기도 어려웠지만, 가족을 구성하였다하더라도 주가나 관가의 필요에 따라 주거이동이 강제되어 가족이 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와 자녀간 혹은 부부간에 수개월에서 평생에 걸쳐 가족과 유리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소인수 가족 또는 1세대 가족을 구성하였다.

조선시대 비자의 노동은 오늘날의 취업노동과 달리 신분강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이 국가와 주가(主家)라는 명백히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와 개인의 가계운영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취업노동과 유사한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의 노동영역을 가내에 국한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을 산업사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제한해보는 것은 편협된 역사적 고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은 산업화와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니며 조선시대 여성의 일이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회적 경제활동 인구로서 여성의 역할은 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과거에는 신분에 의해 특정한 분야에서 강제되었던 역할이 오늘날에는 자유의지에 따라 다양한 직종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을 뿐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따른 문제는 오늘날에만 부과된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존재하였던 것이 그 문제의 양상이 달라졌을 뿐이다. 시대에 따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범위와 내용, 그에 따른 문제는

달라졌지만 사회적인 노동집단으로서의 여성의 역사는 매우 길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성희(1992). 전통사회 여성의 가내노동특성과 경제적 가치. 생활과학연구 제 17권: 1-14.
- 2) 김성희(2000). 가사노동의 변화: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7권 제 4호: 149-158.
- 3) 김용만(1996). 노비생활. 조선시대 생활사.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역사비평사.
- 4) 김용만(1997). 조선시대 사노비연구. 집문당.
- 5)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번역(1991). 이조실록: 태종실록. 서울: 여강출판사.
- 6) _____. 이조실록: 효종실록. _____.
- 7) _____. 이조실록: 고종실록. _____.
- 8) _____. 이조실록: 성종실록. _____.
- 9) _____. 이조실록: 세종실록. _____.
- 10) 안승준(1992). 1554년 재경사족의 농업경영문서. 계간 서지학보 8.
- 11) 오희문·이민수역(1990). 쇄미록 상·하권. 해주오씨추탄공파종중.
- 12) 윤국일(1990). 경국대전연구. 신서원.
-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1984). 한국여성사 1. 이화여자대학교.
- 14) 전형택(1989).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 15) 조선총독부중추원 편(1938). 만기요람 재용편.
- 16) 지승종(1997).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 17) 최재석(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 18) 한국여성개발원(1999). 1998 여성통계연보.